

2023년도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23년도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23년 주요 변경사항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판정 기준일’ 변경

- (변경 전) 2차 시험시행일 ⇒ (변경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21.11.30., 시행 2022.12.1.)」 제25조 제3항

□ 시험 응시 수수료 관련 개정사항

- 2차 시험 응시 수수료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1차 시험) 18,000원 • (2차 시험) 20,000원	• (1차 시험) 18,000원 • (2차 시험) 33,000원

- 수수료 전액 반환 사유 확대

-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 2022.12.1., 시행 2022.12.1.)」 제41조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응시자격(면제) 서류 접수 심사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3. 27.(월) ~ 4. 7.(금) [토 일 공휴일 제외] ※ 1차 시험 과목면제자 심사기간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1차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진행	(정기접수) [5일간] 4. 3.(월) 09:00 ~ 4. 7.(금) 18:00 (빈자리 접수) [2일간] ※ 선착순, 환불불가 5. 11.(목) 09:00 ~ 5. 12.(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 20.(토)	6. 21.(수)
제2차 시험	6. 21.(수) ~ 7. 4.(화) [토 일 공휴일 제외] ※ 응시자격 서류심사 및 2차시험 과목 면제자 심사	(정기접수) [5일간] 7. 31.(월) 09:00 ~ 8. 4.(금) 18:00 (빈자리 접수) [2일간] ※ 선착순, 환불불가 9. 7.(목) 09:00 ~ 9. 8.(금) 18:00			9. 16.(토)	12. 13.(수)

- ※ 과목면제는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2차 시험 과목면제자와 동일 기간에 심사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 접수 기간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11.29. 전부개정, 2022.12. 1. 시행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험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 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상태,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3. 소방관련 법령(①「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②「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③「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④「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⑤「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⑥「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제2차 시험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나. 시험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포함 가능

※ 1차 시험 문제지 및 가답안은 모두 공개하나, 2차 시험은 문제지만 공개하고 답안 및 채점 기준은 비공개

4. 시험시간 및 문항수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 수	시험 방법
제1차 시험	5개 과목	09:30 ~ 11:35(125분) (09:00까지 입실)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4지 택일형
	4개 과목 (일부 면제자)	09:30 ~ 11:10(100분) (09:00까지 입실)		
제2차 시험	1교시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09:30 ~ 11:00(90분) (09:00까지 입실)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논문형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2교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1:50 ~ 13:20(90분) (11:20까지 입실)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시행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11.29. 전부개정, 2022.12. 1. 시행

응시자격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법 제26조)

<응시자격관련 참고사항>

- 대학졸업자란?
 -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위 및 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9조 등에 의거한 학위 인정
 - 석사학위 이상의 소방안전공학 분야는 방재공학과, 방재안전관리학과, 그린 빌딩 시스템학과, 소방도시방재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의 교과목 내용에 “소방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함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붙임1]을 참조하고, 소방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붙임2]을 참조
- ※ 응시자격 경력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2023. 5. 20.)

나. 결격사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7조)

* 법률 제18522호, 2021.11.30. 전부개정, 2022.12. 1. 시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피성년후견인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3.12.13.)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법 제25조 제3항)

6. 합격자 결정

- 가. 제1차 시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나. 제2차 시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7.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칙 제6조」

*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11.29. 전부개정, 2022.12. 1. 시행

가.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 '22년 제22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3년 제23회 1차 시험 면제
- 별도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면제대상	면제과목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면제대상	면제과목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라. 면제과목 선택

- 제1차 시험 과목면제자 중 2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

마. 면제서류 제출

- 대상별 제출서류

면제 대상	제출서류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소방실무경력관련 입증서류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 이 있는 사람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소방공무원 재직(경력)증명서 1부 - 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가 명기된 경력 (재직)증명원 1부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제시) 1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자동조회(제출 불필요)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면제 기준일

- 제1차 시험 과목면제: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3. 4. 7.)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3. 8. 4.)

○ 제출 기간

- 제1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2023. 3. 27.(월) ~ 4. 7.(금) 17:00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2023. 6. 21.(수) ~ 7. 4.(화) 17:00
- ※ 미충족 경력 보완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하고, 2차 시험 시행 전일('23.9.15.)까지 경력 보완 서류 증빙 [토, 일 공휴일 제외]

○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서류 재증”을 표기하여야 함
- ※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사 자격취득자가 제2차 시험 과목면제를 받기 위해 우리 공단(2008년 이후)에 한 번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원서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제출기관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인천지사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3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80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75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67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35000	042-580-9136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032-820-8672

※ 울산 본부에서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 서류접수 및 심사를 하지 않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2023. 4. 3.(월) 09:00 ~ 4. 7.(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2023. 7. 31.(월) 09:00 ~ 8. 4.(금) 18:00 [5일간]

- ※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 제1차 시험 빈자리 접수 : 5. 11.(목) ~ 5. 12.(금)
- ※ 제2차 시험 빈자리 접수 : 9. 7.(목) ~ 9. 8.(금)

나. 접수방법

○ 큐넷(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공통사항]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 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중 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시 자동 조회 가능
- 원서접수 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차 18,000원, 2차 33,000원
- 납 부 방 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 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 전일 18:00부터 시험실 확인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 원서접수 방법

- 일반응시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2022년 제22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큐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소방기술사 자격취득 후 소방실무경력자, 건축사 자격 취득자, 소방공무원은 면제 근거 서류를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인천지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원서접수 가능

9. 응시편의 제공

가.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 (8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 제공 적용 기준' 참고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유형별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장애유형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정도가 심 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2) 상지 경증 (장애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 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3)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단,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 는 종목에 한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신장·신장장투유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10.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23. 5. 20.(토) 14:00 ~ 5. 26.(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를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과 관련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개별 회신을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11.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서류 제출

가. 합격(예정)자 발표

구 분	발표일자	발표내용	발표방법
제1차 시험	6. 21.(수) 09:00	- 개인별 합격여부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60일간]
제2차 시험	12. 13.(수) 09:00	- 과목별 득점 및 총점	- ARS(유료) (1666-0100) [4일간]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에 추후 공지

※ 제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소방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을 취소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 제출대상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자와 동일 기간에 서류 접수·심사 실시

○ 제출기간 : 2023. 6. 21.(수) ~ 7. 4.(화) [10일간, 토, 일, 공휴일 제외]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대상자가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후 부적격자일 경우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을 취소

※ 제1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자 중 면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서류 제출이 불필요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응시자격 유형	제출서류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2차1과목면제]	<input type="checkbox"/> 건축사 취득자 - 자격증 원본 제시 <input type="checkbox"/> 건축사 외 자격 취득자 - 별도 제출 불필요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전산조회로 같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같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같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같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차1과목면제]	소방공무원 경력(재직) 증명서 1부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같음

응시자격 유형	제출서류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 소방공무원 및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소방실무경력 유형	제출서류
1.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자	①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한국소방시설협회(구: 한국소방공사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① 협회장 발행 경력증명서 1부 ②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소방관련업체 근무자>

근무 유형	제출서류		
	구분	사업주 확인 가능자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1.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2.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3.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4대 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p>※ <u>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必</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 존속>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사업체 폐업>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p>※ <u>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必</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p>※ <u>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必</u></p>
4.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 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5.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경력 6.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7.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 업무를 담당한 경력	4대 보험 미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 존속>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사업체 폐업>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p>※ <u>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必</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p>※ <u>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必</u></p>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소방관계자로 근무한 경력>

근무유형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① 소방안전관리자수첩사본(원본지참제시) 또는 관할 소방서 발급 선임증 1부 - 선·해임일자(선임기간) 및 소방안전대상물의 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2.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삭제) ※ 개정 고시 시행('16.2.19.) 전 경력은 기존과 같이 인정(유효기간 없음)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건축물관리대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3.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사본 1부(원본지참제시) - 선·해임일자 명시되어야 함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4.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④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기업체 등에서 근무)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④ 화학 소방 자동차 보유증 사본(원본대조필)
6.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지방소방서의 무급 봉사자)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소방관서에서 발급
7.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8.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9.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10.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11.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경력증명서 1부 -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산하·관련 단체 근무자>

근무유형	제출서류
1. 한국소방안전원(舊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진단·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할 경력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검정·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경력 3.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경력 4.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 5.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할 경력 6.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 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경력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기타 근무자>

근무유형	제출서류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① 소속기관 경력(재직)증명서 1부 (단, 근무 기간 및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 근무부서가 소방관련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무분장표 또는 사무규칙 등 추가 서류 제출 ※ 단, 소속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력(재직)증명원”(소정양식)1부 제출		
근무유형	구분	사업주 확인 가능자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2.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3.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동일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u>인증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必</u>

	4대 보험 미가 입자	<p align="center"><사업체 존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p align="center"><사업체 폐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p>※ <u>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必</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p>※ <u>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必</u></p>
--	----------------------	--	---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p><4대보험가입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 : ☎ 135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 1577-1000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 ☎ 1355 <p>※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 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필요])</p>
--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접수는 서류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서류 재증”을 표기

※ 소방시설관리사 서류심사 관련 서식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bsiseol>)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라. 제출기관 : **7.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사항** 의 마항 “제출 기관”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울산광역시)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울산 본부로 제출 시 서류접수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접수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 사유임

※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시험장 관할 전문자격시험부 또는 필기시험부로 제출

마.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2023. 7. 17.(월) ~ 7. 21.(금) [5일간]
-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공고

12. 자격증 발급 신청

가. 신청기관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02-532-1191)

나.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 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 사항은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 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 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 배치도 부착함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시험전일 18:00부터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 - 진행중인 접수 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이 불가합니다.
 -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0점)처리
 - ※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 제1차시험 및 제2차 시험(2교시에 한함) 시험시간 1/2시간 경과 후 시험을 마친 수험자의 중도 퇴실 허용
- 5) 일부 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 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0점)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8)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 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 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11)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4)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

공지 사항에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 15)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A형 공통)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 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함
-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5)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 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bsiseo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0호」

□ **소방안전 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

□ **소방안전관리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전기·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

<붙임2>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

□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3호」

실무경력 인정범위

□ 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1. 소방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아래의 경력

-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아래의 경력

-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차.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진단·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검정·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 바.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실무경력 인정범위

4. 기타 근무경력

-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함)

□ 소방공무원의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기준

1. 화재안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의 공사·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 관련 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8.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
9.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
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대책·홍보·민원 처리 및 감독 업무

실무경력 산정방법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총 경력을 합산하여 잔여경력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
3. 응시자격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2023. 5. 20.)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사례 1) A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보조 선임하여 5년 근무 하던 중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때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추가로 필요한 경력은?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무중임)

실무경력 산정방법

- 소방설비기사 취득 전 필요한 실무경력은 10년이고, 10년 중 5년 근무하였으므로 $60/120(\text{개월}) = 0.5$ 이며, 두 경력을 합산하여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기사 자격취득 후 나머지 0.5 만큼 근무하면 되므로 기사 취득 후 필요한 경력은 1년($24\text{개월} \times 0.5$)입니다.

사례 2) B가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이 2년이고, 기사 취득 후 경력이 6개월일 경우 응시 자격을 충족할까?

-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3년 중 2년 근무하였으므로 $24/36(\text{개월})$ 이고, 기사 취득 후 6개월 경력 있으므로 $6/24(\text{개월})$ 입니다. $0.66 + 0.25 = 0.91$ 이므로 합산한 값이 1 미만이므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별지 1】 서류심사 신청서(공통서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서류 심사 신청서												
1. 수험자 기재사항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			일반전화 ☎ :								
이메일주소												
2.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차 시험 과목면제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방기술사 자격취득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자											
2차 시험 과목면제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 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input type="checkbox"/>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 <input type="checkbox"/> 졸업증명서 원본 <input type="checkbox"/>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경력(재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및 공공기관용 재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input type="checkbox"/> 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폐업사실증명원 <input type="checkbox"/> 건축물관리대장 <input type="checkbox"/> 동일학과인정확인서 <input type="checkbox"/> 4대보험 가입증명서											
<p>본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면제 및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명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해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뿐 아니라 이 신청서 및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관련서류 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수험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후 제출서류내역에는 해당항목에 한 후 붙임은 제출하는 서류의 부수를 기재바람

【별지 3】 공단양식 경력(재직) 증명서

(앞 쪽)

경력(재직) 증명서					
수험자 주소				전화번호	
수험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응시자격 또는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수험자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이하 근무기관 기재사항)				발 급 자 (서류발급 담당자)	
기 관 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직인)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또는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경력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및 형사처벌(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 쪽)

경력(재직)증명서 작성방법

- ① 주 소 : 주민등록지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전화번호 :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③ 성 명 : 한글로 기재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 기간을 년. 월. 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⑦ 담당업무내용 : 담당업무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⑧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 증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⑨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 성명을 쓰신 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별지4】 사업장의 부도·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에 사업주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작성

사 실 확 인 서

<수험자>

- 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전화번호 :

근무직장명	직 위	재 직 기 간	담 당 업 무	비 고

본 사실 확인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응시 자격 또는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에 필요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 위조·변조 등)도 감수하겠다는 명심하고 위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무처 : · 직위 :
- 근무처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응시자와의 관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관련)	
수집·이용 목적	응시자격(경력) 서류심사
수집 개인정보 항목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핸드폰번호, 주소,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귀 공단 내규에서 정한 문서 보존기간 동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이 경우 경력사항 확인 불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한 자 등)
-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첨 부 :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 의사 확인용으로 사용되며, 도장 및 사전 등록 등이 불필요하여 국민 편의성이 강화된 증명서입니다.
- 발 급 처 : 구청, 군청, 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방문 등록 사용)
- 수 수 료 : 6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5분 내외 소요
- 구비사항 : 신분증(방문), 공인인증서 및 방문 등록(온라인)

2. 유의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자격시험용, 경력증명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처는 서류심사 서류를 제출한 공단 지사(예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